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

2016. 4. 8. 통합실무지원단

1. 검토 방향

가. 현재 상황 : 향후 위원회 운영의 정확한 예측불가능

▣ 사법부 역사상 첫 번째 행사

- 사법부 역사상 처음 시도된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행사로서 그 진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불가능

▣ 위원회 구성의 문제

-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vs 다수 법관의 의사 대변할 법관 상대적 소수
-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안건을 결정 · 회부하더라도 실제 의견수렴 및 회의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존재

나.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검토 시 유의점

▣ 예측가능성의 최대한 확보

-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적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정적 안건을 결정 · 회부
- 주도면밀한 회의자료 준비를 통해 실제 회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

▣ 위기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

- 결정 ·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의견을 사전에 철저히

검토하여 갈등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 필요

▣ **위원의 역할 명확화**

- 무절제한 자기 의견 주장 〈 **법관들의 의견 폭넓은 수렴 및 전달**

2. 향후 진행일정

가. 위촉식 행사 (4. 11.)

▣ **돌발 위험 요소 최소화**

- 위원회 구성경과 및 사법행정 현안 보고 시 생방송 X
- 위원회별 간담회 시간 감축(종래 1시간 20분 예상 ⇒ 1시간 이하)

▣ **위원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각인**

- 위원의 역할은 2주의 의견수렴 기간(4. 18. ~ 4. 29.) 동안 결정된 안건에 대한 일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
- 즉, **결정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리의 주체가 위원**임을 명확히 각인시킬 필요

나. 안건 제출기간 종료 (~4. 12.)

다. 내부검토 및 안건 결정 (4. 13. ~ 4. 15.)

▣ **일선 법관이 제출한 안건 우선 검토**

- 현재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 제출된 안건(합의부 운영의 적정화)은 내부검토된 안건과 일치하므로 채택 가능함
-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(재판연구관 보고서 검색)은 채택하기에 부적절함 (제안자 본인도 철회를 희망하였음)

▣ **법관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건 적극 채택**

라. 결정 안건에 관한 보고서 작성 (4. 16. ~ 4. 17.)

▣ **결정 안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할 주무 심의관 확정**

▣ **위원회별 보고서 작성방식 차별화 필요**

- **법원문화발전위원회** : 소관 사항상 민감하거나 예민한 안건 결정 가능성 높음 ➡ 결정 안건에 대한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 공개 시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있음 ➡ 결정 안건 당 **2~3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쟁점 위주 보고서** 작성 적극 검토

- **재판제도개선위원회** : 소관 사항상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법관 누구나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안건 결정 가능성 높음 ➡ 결정 안건에 대한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 공개하더라도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거의 없음 ➡ 각 결정 안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동안의 **관련 연구 성과를 요약**하고 의견수렴 및 실제 회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**모든 쟁점을 분석·정리**하는 정도의 **상세한 보고서** 작성 적극 검토

마. 결정·회부 안건 공지 (4. 18.)

▣ **주요 공지사항에 처장님 명의 결정·회부 안건 안내글 게시**

- 안내글 게시 시 **안건의 결정·회부 이유 설명** 필요

  - 행정처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,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의 필요성, 시급성, 적시성 및 중요도, 일선 법관들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을 결정·회부하였다는 점 적극 공지할 필요

▣ **일선 법관에게 결정·회부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 요청**

- 결정·회부 안건에 관한 처장님(또는 차장님) 명의의 안내글에는 간략하

게만 언급하고, 각 위원장 명의의 코트넷 전용공간 게시글에 상세하게 언급

바. 회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(4. 18. ~ 4. 29.)

▣ **위원회에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서 제공 및 의견수렴 부탁**

-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위원 각자의 오프라인 의견수렴 병행

▣ **안건별(또는 쟁점별) 주무위원 선정 적극 고려**

- 4. 11. 위원회별 간담회 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, 충실성 등을 위해 회부 안건별로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정리업무를 담당할 주무위원 선정 적극 검토 요청

▣ **회부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내부 논의 활성화를 위해 코트넷 커뮤니티 오픈**

▣ **행정처에 대한 자료제출, 법관 상대 설문조사 등 요구는 위원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 또는 불합리한 요구 사전 방지 장치 마련 필요**

▣ **주무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온라인·오프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·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**

사. 통합실무지원단에 의견수렴 결과제출 (4. 29.까지)

▣ **각 위원장이 회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·정리하여 통합실무지원단에 제출**

- 명분 : 일선 법관들의 의견 전달 + 실질적 회의를 위한 회의자료 마련
- 효과 : 무분별한 자기의견 위주 회의 지양 / 다양한 의견수렴

▣ **의견수렴 결과제출이 다소 지연될 우려 있음**

- 제출 마감시한을 4. 29.로 정하더라도 그 다음 주인 5. 2.이나 5. 3.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아. 통합실무지원단 회의자료 작성 (4. 30. ~ 5. 10.)

▣ 회의자료 작성에 충분한 시간 필요

-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수렴 취합·정리 결과 철저 분석 ⇒ 실제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의견,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 (리스크 최소화)
- 충분히 검토한 후 기존 연구자료 등을 참작하여 회의자료 작성

▣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필요

-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, 결론 등에 대한 예측(건의안의 수용가능성 등) 및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
-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,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➡ **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**할 필요

자. 위원회에 회의자료 제공 (5. 11. ~ 5. 15.)

▣ 5. 11. 위원회에 회의자료 제공

▣ 5. 11. ~ 5. 15. 위원 각자 회의자료 검토

- 위원장 통해 회의자료 수정·보완 요청 시 통합실무지원단 검토 후 반영

차. 1차 회의 개최 (5. 16.)

▣ 개최기간 : 1일

- 1일 vs 2일

● 검토 : 1일

- 가급적 **회의 전에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한 충분한 사전 검토**가 이루어지게 하고, **실제 회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토의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**될 수 있도록 함

▣ **개최일자 : 5. 16.(월)**

● 5. 9.(월) 개최 ➟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,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**시간이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가 곤란할 우려** 있음

● 5. 12.(목) 또는 5. 13.(금) 개최 ➟ 회의자료 준비 등의 기간을 단축할 경우 검토 가능하나, **목·금요일은 재판기일이 많은 요일**인데다가 그 전주 목요일(5. 5. 어린이날)과 금요일(5. 6. 샌드위치 휴가 가능성)에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**위원들 참석 어려움 예상**

카.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공개 여부

▣ **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사항임**

▣ **공개 여부 및 범위 ☞ 위원회별로 달리 정할 필요**

● **법원문화발전위원회** : 민감 · 예민한 안건 회부 가능성 높음 ➟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**전부 공개 시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** 있음 ➟ **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공개 범위 가급적 최소화**할 필요(필요시 위원장이나 신뢰 가능한 일부 위원에게 그러한 취지를 적절히 전달하는 방안 적극 고려)

● **재판제도개선위원회** : 민감 · 예민한 안건 회부 가능성 높지 않음 ➟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**전부 공개하더라도 일선 법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가능성 거의 없음 ➟ 회의자료 및 회의 내용 원칙적 전부 공개할 필요**

▣ **공개 방법**

- 위원회별 코트넷 전용공간에 게시
- 이와 별도로 1차 회의 직후 주요 공지사항에 기조실장님 명의로 위원회별 건의안 기타 의결 내용 요지를 정리한 안내글 게시